

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(제4조의2 관련)

1. 일반사항

- 가.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가 정한 "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(ISO/IEC 17065)"에 적합한 한국인정기구(KOLAS)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(IAF MLA)에 속한 회원 인정기관에서 동일한 인정분야 및 범위에 대해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인정기구(KOLAS) 제품인증기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나. 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「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」 별표 1 제8호의 어업 또는 수산물 식료품 제조업에 한한다.
- 다. 인증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, 설립목적, 현황,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, 조직도, 자금 확보, 활용계획 및 결산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조직

- 가. 인증기관은 법인체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.
- 나.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대표 및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다는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- 다. 인증기관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통장의 잔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증명해야 한다.
- 라. 지정취소, 부도 및 해산 등으로 인증사업자의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3. 인력

- 가.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상근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.
- 나.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수행 시 인증업무의 범위에 따라 규칙 제31조의2

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중 다음과 같이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상근 인증 심사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.

- 1) 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: 수산분야 자격
- 2) 유기가공식품: 식품분야 자격

4. 시설

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다른 시험·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- 가. 위탁 업무기간, 업무범위, 계측방법, 분석방법, 분석기간, 수수료, 기밀 유지, 계약해지 조건,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.
- 나.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시료를 15일 이상 보관하고 검사 결과의 원본자료(raw data)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.
- 다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목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
- 라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 등에 협조해야 한다.
- 마. 시험·검사기관의 업무정지,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.